

Korean Tax Update

July 2017, Issue 37

[조세뉴스]

국세청,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전문보기]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7.7.18.(화)부터 시작함.

- 종전에는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 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신고에 있어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였음.
- 또한, 인터넷으로 간단히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산평가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연계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가. 관계기업 판단시점 개선(안 제 3 조의 2, 안 제 3 조의 3)

- 사업연도 말일 이후에 지분관계 변동 등 지배종속관계 변화로 관계기업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외사유가 해소된 기업은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새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기업 졸업유예 포기 허용(안 제 9 조, 안 제 9 조의 2)

-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졸업 유예없이 바로 중견기업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유예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예기간 부여

다. 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반영(안 별표 1, 3)

- 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이 표준산업분류 개정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업종의 규모기준을 표준사업분류 개정이전에 속하던 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하고, 업종명칭 변경 등을 반영함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 내달 2일 세법 개정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27(목) 국회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함. 이 자리에서 당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하였음.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함.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세법개정안은 내달 2일 공식 발표될 예정임.

[예규·판례]

[판례 1]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 두 28414 판결

-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 767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5 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 1 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제 2 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어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함.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판례 2]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제 3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주체가 되어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 두 48754 판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 3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 991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 제 1 항 제 17 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시설을 목적물로 하여 그 단체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주체가 되어 이러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임대용역에 제공되는 시설이 행정재산에 해당하거나 그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해당 시설의 용도 등과 결부되어 공익적 성격을 갖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판례 3] 금융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신탁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그 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한 이자비용은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을 계산 시 차감 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임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 두 49115 판결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3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 조의 3 제 1 항에서의 차입금의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 제 7 호에서 손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한 '차입금 이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금융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신탁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그 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 제 7 호의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법인세법령에 의해 손금불산입 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될 수 없음.

[판례 4] 비영리법인이 당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어느 시점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가 그 후 타인에게 처분된 경우, 그 토지의 처분수익 계산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취득 당시의 매입가액임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 두 64722 판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 제 2 호에서 정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란 취득 당시 매입가액 등을 기초로 하되, 기업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른 장부 가액을 의미하고, 자산의 취득 후 기업회계상 평가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자산의 장부 가액'에 반영할 수 없음. 이러한 법리는 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이 수익사업회계에 전 입된 때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76 조 제 4 항에 의 하여 기업회계에 따른 장부가액이 당초 매입가액에 평가차익이 추가된 시가로 계상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76 조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 · 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 하기 위한 구분경리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을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과거 비영리사업에 사용한 기간 동안의 평가차익 부분 을 양도 시점에서의 손금으로 반영하여 공제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 손 비로 인정되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이 사건 토지가 비영리사업회계에서 수 익사업회계로 전입될 당시의 시가가 아닌 토지 취득 당시의 매입가액임.

[심판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임

조심 2016 종 4350, 2017. 6. 30.

-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그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 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60 억원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지급기준에 따라 쟁점임원들에게 성과보수 명목으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례 2] 상증법상 주식의 할증평가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소멸되지 않음

조심 2016 종 2352, 2017. 6. 21.

-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호는 '중

'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3 호는 '중소기업'이 제 3 조 제 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 3 조 제 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중이던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심판례 3] 1 차거래시 부여되어 2 차거래시 대금결제에 사용된 증정상품권 상당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조심 2017 중 1478, 2017. 6. 13.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그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래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재화에 대한 구매권리가 주어진 증정상품권 등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유사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단말기구입 보조금, 할인쿠폰 등의 경우는 그 용도가 단말기 구입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에누리액이 발생하여 이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점 등에서 이 건의 경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증정상품권 등은 통상 공급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당해 물품 공급대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물품 구입(2 차거래)시에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조 제 4 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정상품권 등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심판례 4]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 2016 지 0107, 2017. 5. 31.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업도시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그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실시계획을 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청구법인을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이 건 실시계획의 승인을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각각 볼 수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2조 제 5 항 제 18 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6 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예규 1] 내국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재법인-879, 2017. 7. 13

- 내국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 제 27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예규 2]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법령법인-5680, 2017. 6. 28

-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법인과 임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50 조의 2 제 4 항 제 1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예규 3] 주권상장법인이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비상장으로 발행하는 경우,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사전법령법인-398, 2017. 6. 27

-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의결권이 없는 상환전환우선주(이하 "쟁점주식")를 상장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산정기준일 한국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예규 4]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 의 3 제 18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법인-914, 2017. 6. 26

-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 규칙」 별표 6 의 3 제 18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예규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5 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3525, 2017. 5. 22

- 법인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5 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지출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파견근로자가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세법」 제 116 조 제 2 항에 따른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17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